

데이터 손상, 손실시 대처 요령 “한길TIS로 백업해 보세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0월과 12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업무에 필요한 전자기기, 사무용품, 소프트웨어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공동구매를 진행했다. 그래서인지 한길백업 이용자의 서버PC(회계데이터가 저장된 PC) 변경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했고, ‘윈도우7’의 서비스 종료일(2020년 1월 14일)에 근접하면서 ‘윈도우10’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사용자의 데이터 백업관리 문의도 증가했다. 세무사사무소에서 문의가 많은 회계데이터 손상, 손실 사례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관리해야 할 회계데이터 관리 방법에 대해 백업전문 시스템을 운영중인 한길TIS를 통해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조치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편집자>

1) 서버 pc 변경 후 회계프로그램 오작동 사례

A세무사사무소의 서버 PC를 교체하기 위해 새 서버 PC로 회계데이터를 옮겼으나, 회계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행히 한길백업을 통해 회계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특정 파일들을 복원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주로 회계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거나, 서버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을 때 회계데이터를 복사이동 작업을 할 때 발견된다.

그래서 회계데이터를 복사이동하는 경우에는 복사하는 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용하고 있는 파일은 복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회계프로그램과 서버프로그램을 사전에 종료해야 한다.

2) 윈도우 재설치시 회계데이터 삭제사고 사례

B세무사사무소의 서버PC 윈도우를 재설치 하면서 회계데이터를 모두 삭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윈도우를 재

설치하기 전에 한길백업을 통해 백업을 완료해놓고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길백업을 통해 가장 최근 시점의 회계데이터를 모두 복원했다.

대다수의 PC는 윈도우를 C드라이브에 설치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를 재설치를 할 경우에는 C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가 삭제된다.

그래서 C드라이브에 회계데이터를 저장할 경우 윈도우 재설치 또는 포맷을 하면 회계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들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데이터손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사용하고 있는 서버 PC에 드라이브가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중요 데이터들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을 추천한다.

3) 랜섬웨어 감염사례

랜섬웨어에 감염이 되어 회계데이터 및 일반문서 파일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례도 확인된다.

C세무사의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지만, 한길백업을 통해 미리 백업해 두었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랜섬웨어는 감염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외유명 유료백신들로도 랜섬웨어를 미리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 전에 미리 회계데이터를 백업을 해놓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한길백업은 랜섬웨어와 관련된 파일은 백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랜섬웨어 감염 전에 백업한 데이터를 복원하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다.

4) 사용자 실수로 회계데이터를 잘못 덮어씌운 사례

서버 PC를 변경 후에 회계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아무런 데이터가 없거나, 잘못된 자료가 보이는 사례도 자주 확인된다.

이런 경우의 90%는 회사등록정보가 잘못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등록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변경하면 복원할 필요없이 데이터 조화가 가능하다.

D세무사사무소 직원 요청으로 1000번 회사코드를 복원했으나, 데이터 조화가 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복원 전에 잘못된 회사코드를 덮어씌워 회사등록

정보로 변경되어 있었고, 1000번 회사코드의 원래 회사등록대로 수정하여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 외 회계프로그램과 회계데이터의 경로설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거나, 실제로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다.

한길TIS는 현재 2천여 세무사들에게 안전하게 회계데이터 백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다양한 사례의 경우에도 원격지원을 통해 세무사사무소의 회계데이터 및 중요문서를 백업, 복원해주고 있다. 또한 한길백업 서비스에 사용되는 한길TIS의 백업장비와 그 장비에 백업된 데이터들은 LG U+ IDC에서 24시간 보안/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최신의 장비들로 2차백업을 병행함으로써 이중구조로 완벽하게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아직까지 회계데이터의 백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일일이 수동으로 외장하드에 데이터를 옮겨담는 세무사 사무소, 또는 상대적으로 비싼 백업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세무사 사무소가 있다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회계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한길TIS의 한길백업을 사용하실 것을 꼭 추천드리는 바이다.

▶10면, '꼬마빌딩 증여와 셀프(self) 감정평가'에 이어서

이런 규정은 납세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하여 필자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6.02.05.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납세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소급감정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률에서 위임도 없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를 통해 납세자에게 소급감정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과세당국이 신고기한 이후에 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

려면 납세자에게도 소급감정을 허용하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평가와 관련하여 증액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하고 있다. 반면에 납세자가 증여를 하고 신고할 때 예상세액보다 더 납부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증액 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비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 감정가액의 적극적 활용방안

그동안 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것을 2004년부터는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사례가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5년부터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지난 2019.02.12.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신고기한 이후의 사례가액

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에서 부담을 느낀 세무사들의 우려 속에 시행이 되었다.

이러한 과세당국의 사례가액 적용 범위 확대 노력에도 꼬마빌딩을 부모가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 과세당국이 실제가치에 근접한 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 꼬마빌딩 증여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세당국이 무리하게 시도하는 밑바탕에는 재산의 평가방법과 세금을 부담하는 시기 등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지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본이득 과세방식으로 현명한 납세자는 자본이득이 많이 발생한 부동산은 양도하지 않고 증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취득 이후 단계의 과세에 대해서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소득세율보다 한계세

율이 낮게 적용될 수도 있다.

소득세의 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46.2%로 과세되는 반면에,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 구간에서는 30%,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구간에서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상속세가 미달 되거나 증여세 한계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정기관의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 김완일 세무사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 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